

```
[ 2014. 12. 29.] [ 159 , 2014. 12. 29.,
                                         (
                                               ) 044 - 201 - 3914, 3917
1 ( ) <sup>[</sup> , 52
                                                          가
, 가 ,
      . < 2014. 7. 15. >
[ 2010. 9. 15.]
2 ( )
                                 . < 2014. 12. 29.>
1. "
             가
2. "
                                         가
                                                      가
3. "
                                                     (私設)
4. " 가
                                              가
6.
   <2014. 12. 29.>
7. "
                                              가
8. "
    (側道)" 가
9. "
10. "
11. "
    (緣石)"
[ 2010. 9. 15.]
" " ) 12 1
                                               ( 23 2
                     . < 2014. 7. 15., 2014. 12. 29.>
         )
                 4 1 2
       가
[ 2010. 9. 15.]
4 ( 가 )
                52 1
         가
                     ( "
                                  )
                                                  2014. 7. 15.,
2014. 12. 29.>
1
                       가
                                                  .< 2014. 12.
29.>
1.
```

```
2. , 가 , ( "
1/1,200
                                        )
3.
                                                       )
   2 1
1.
   (
2.
3.
4.
5.
                                          )
   2 2
                              1
                                  2
                            가
                         1
          6
                   가
            가
                         .< 2014. 12. 29.>
                        가 가
3 가
            가
                   가
                                               가
   2
            가
      )
                          2014. 12. 29.>
                    .<
[ 2010. 9. 15.]
               가 )
5 (
                                             6 1
                                              가
                         가( 4 6
                                         가
                                               가
   )
              2012. 4. 13., 2014. 12. 29.>
         . <
         가「
                          2 ر
          )
               가
2.
                                                     85
               1
    가
                        가
가
                 (
)
                                   2014. 12. 29.>
    2010. 9. 15.]
[
6 (
     가
        )
     가
                 , 1 , 2 , 5 6
                          . < 2012. 4. 13., 2014. 12. 29. >
1.
         280 (2
                         140 )
     가
         3
                                  (視距)
2.
    (縱斷) 가 6 ,
                                               가
                           가
3.
                                     5 1
5가
```

```
4 2 3
               )
 가. 「 」 2 1
  . г
                         (面道) 2
  . 2
                    6
4. <2014. 12. 29.>
                                       가
5.
가.
       가 60
                                      300
       가 60
                                       350
6.
7.
         가
[
      2010. 9. 15.]
7 (
         )
                             (橫斷) 가
[ 2010. 9. 15.]
8 ( )
                                     . < 2014. 12. 29. >
1.
    5
2.
    3.25
3.
4.
                              12
                                                . , 2
5.
[ 2010. 9. 15.]
8 2(가)가
                                        . < 2014. 12. 29. >
1.
                 500
2. 3
3. 가
                          12
                                            . , 2
[ 2010. 9. 15.]
9 (
   )
                                      . < 2014. 12. 29. >
1.
2.
3.
                        , U (側溝)
```

```
20
4.
                                                   가
                          (汚水)
                                          30
                                                            60
    2010. 9. 15.]
[
10 ( )
                                          . < 2014. 12. 29. >
1.
2.
              , (
                           2 3 가
                                      4 가
   )
3.
           0.3 (
                      0.12
                                              가
                          )
4.
                                                              U
                                   30
          가
5.
                                        가
6.
[ 2010. 9. 15.]
                                                       2014. 12. 29.>
11 (
              )
                                                        . , 가
1.
                                          1
2.
                                                    가
3.
                  0.25
4.
[ 2010. 9. 15.]
12 (
                                                     . < 2014. 12. 29. >
      )
1.
2.
                                            가
[ 2010. 9. 15.]
13 ( )
                                    가
[ 2010. 9. 15.]
14 <2002. 4. 27.>
```

```
< 204 ,1999. 8. 9. >
      ) 1999 8 9
  (
                                                  가
                                                                 가
                    )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2005.12.30 >
          < 314 ,2002. 4. 27.>
(
    )
(
                      ) 6 3
                                  , 8
                                       2,
                                            2,
                                                       5
           가
       < 345 ,2002. 12. 31.>(
                                              )
       ) 2003 1 1
 2
      3
 4 (
              )
 5
 5
          < 375 ,2003. 10. 8.>
(
   )
                                                     가
(
                     ) 6
          < 486 ,2005. 12. 30.>
(
    )
(
    가
                     ) 6,
                              4, 4 2, 5
가
```

```
< 10 ,2008. 5. 13.>
      )
1 (
2 (
               가
                           ) 5 , 6
                                      2
       가
       < 282 ,2010. 9. 15.>
1 (
      ) 2010 9 23
           ) 9
                                       가
2 (
      < 456 ,2012. 4. 13. > (
      ) 2012 4 15
2
3 (
           )
 5 1 1 "
 6
 23)
   < 111 ,2014. 7. 15. > (
     )
        2014 7 15
2
    5
6 (
          )
            64 " " 「 」 52 " .
                                      ( 20 2
           ) ر
                      ) 10 1
                                   ) 12 1
                    )" "F
                           " " "
                                                     (
                           ")".
  23
     2
  4
                    52
           64
                                 , 52 , 61 " ,
                      , 64 " "Г
                    38
                 "「」  61 1 "
                                 . " 64
                                        2 " "Г
                                                   52
                       "700 " "2
 1 "
                                       97
                                           3
           114 6 " , " 41 101 "
                                       66 107 2 1 "
     72
                   " Г
                           」 28 5 1 5
```

7

< 159 ,2014. 12. 29. >

## [별표 1] <개정 2010.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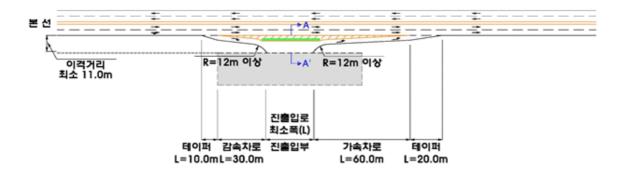
#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

도 면 명	작 성 요 령
위치도	1/50,000(또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에 연결 시설물의 위치
취시도	표시
	연결부 주변의 지형·지물을 1/1,200 이상 축척으로 작성(접속
	되는 도로의 중앙선, 포장 끝선, 길어깨선, 도로부지 경계선, 접
   평 면 도	도구역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3
정신도	항에 따른 도류화시설, 배수시설, 분리대, 그 밖의 시설물의 위치
	등을 표시. 다만, 도로대장 또는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
	에 따라 제작된 기본도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연계하여 작성)
	세로 방향 1/1,200 이상, 가로 방향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
종 단 면 도	[측점(測點)은 20미터 간격으로 하되, 땅의 표면 높이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추가 측점으로 설치]
	측점마다 1/100 이상 축척으로 작성(배수시설, 분리대, 도로의
횡 단 면 도	중심선, 도로부지 및 접도구역의 경계선 등을 표시. 횡단면의 범
중간단포	위는 시공계획 폭 양쪽으로 연결 시설물의 영향이 미치는 부분
	까지 포함)
구 조 물 도	각종 구조물의 규격과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
	로 표시하여 작성
부 대	변속차로등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방호시설, 노면표시
공 사 도	등)에 대한 상세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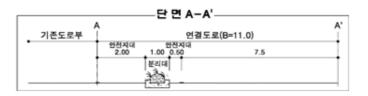
#### [별표 2] <개정 2014.12.29.>

### 변속차로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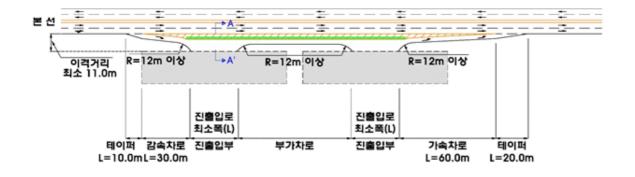
- 1. 직접식 변속차로 설치
-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 사업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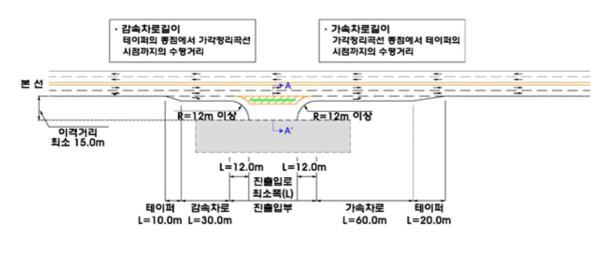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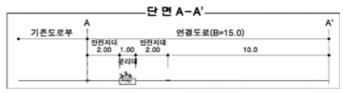
[[]] 사업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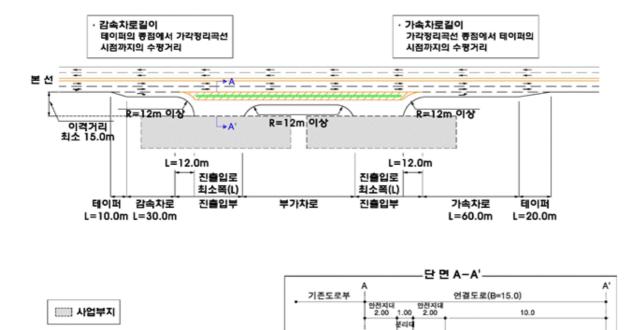
-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 사업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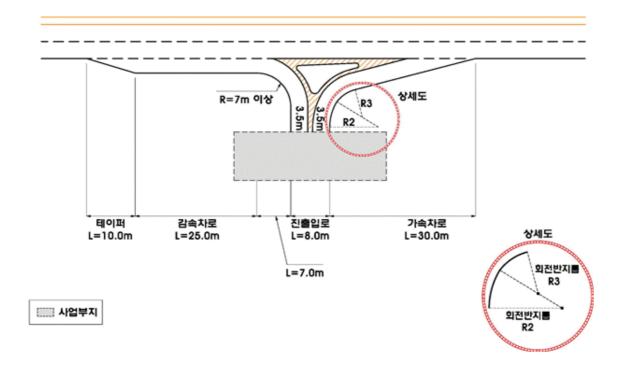


###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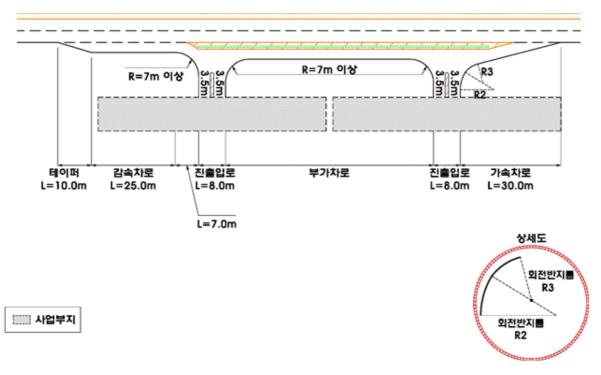


3. 평행식 감속차로와 직접식 가속차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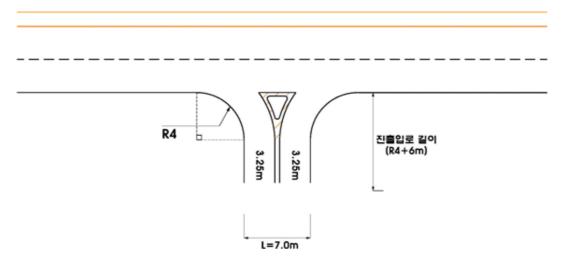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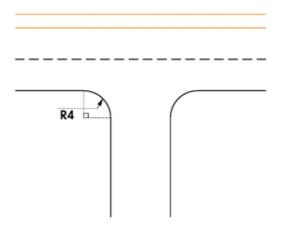
###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4. 도로의 모서리곡선화를 통한 변속차로 대체(代替) 설치 가. 곡선 반지름( $R_4$ ) 5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곡선 반지름(R4) 3미터 이하인 경우



비고

- 1. 위 표 중 R은 곡선반지름, L은 길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미터(m)로 한다.
- 2. 사업부지와 변속차로등의 연결지점은 부지경계선 중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 3. 위 표 중 이격거리는 본선 차도(길어깨를 제외한다)의 바깥쪽 차선과 사업부지 간 의 최소 거리를 말한다.
- 4. 위 표 중 제1호와 제2호에서 진출입로 최소 폭(L)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 20m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0m로 한다.
- 가. 별표 5 제1호의 시설란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사목(주 차대수 51대 이상), 아목(101가구 이상)
- 나. 별표 5 제2호의 시설란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주차대수 31대 이상), 사목(주 차대수 51대 이상), 아목(101가구 이상)
- 5. 위 표 중 제3호가목과 제4호가목은 분리대를 교통점의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 6. 위 표 중 제3호에서 곡선 반지름  $R_2$ ,  $R_3$ 의 크기는 가속차로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며 그 최소 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가속차로의 길이(미터)	R <sub>2</sub> (미터)	R <sub>8</sub> (미터)
30	10	7
25	7	5
20	7	5

[별표 3] <개정 2014.12.29.>

곡선구간의 곡선반지름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호 관련)

(단위: 미터)

구 분	4차로 이상				2차로		
곡선반경	260	240	220	200	120	100	80
최소거리	7.5	8	8.5	9	7	8	9

비 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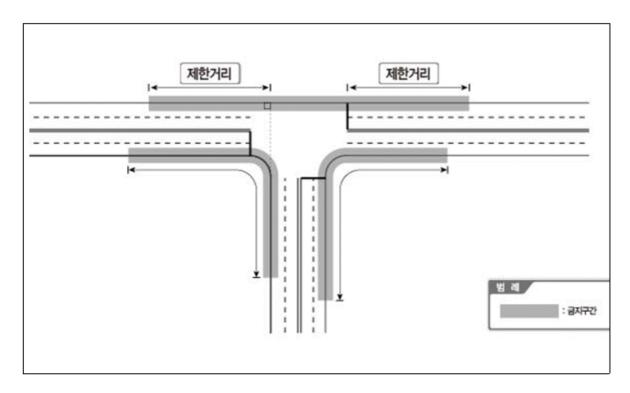
#### [별표 4] <개정 2014.12.29.>

###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

- 1.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 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연결 금지구간은 도로가 교차하는 물리적인 영역과 제한거리로 한다.
  - 나. 제한거리는 감속차선의 경우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산정하고, 가속차선의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속도	설계속도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킬로미터/시간)	(킬로미터/시간)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50	25	40				
60	40	60				
70	60	85				
80	70	100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 2.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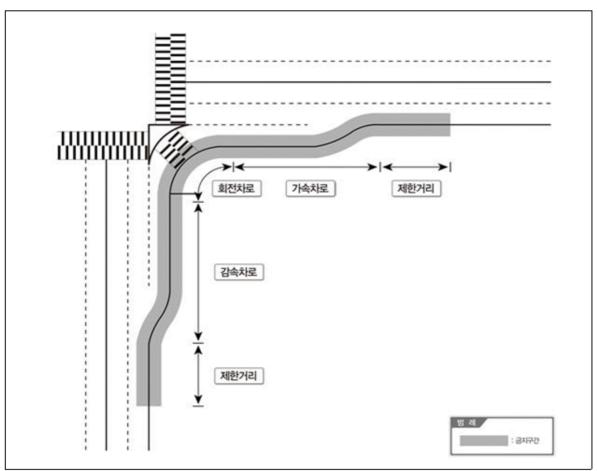
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가속·감속차로 전방·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 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10	20

-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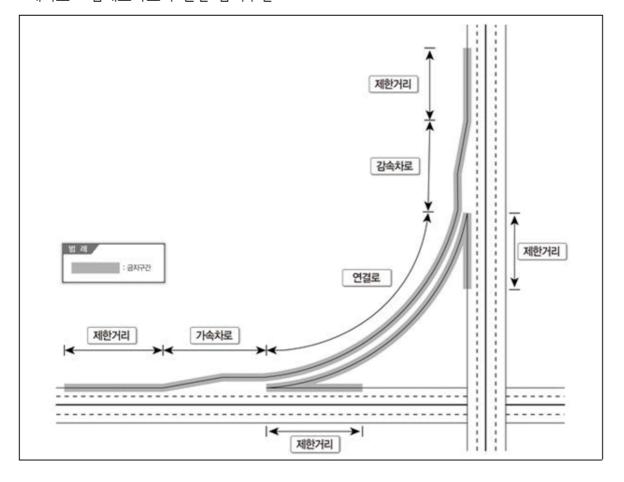
- 3. 입체교차로에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입체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 나. 제한거리는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 · 후방에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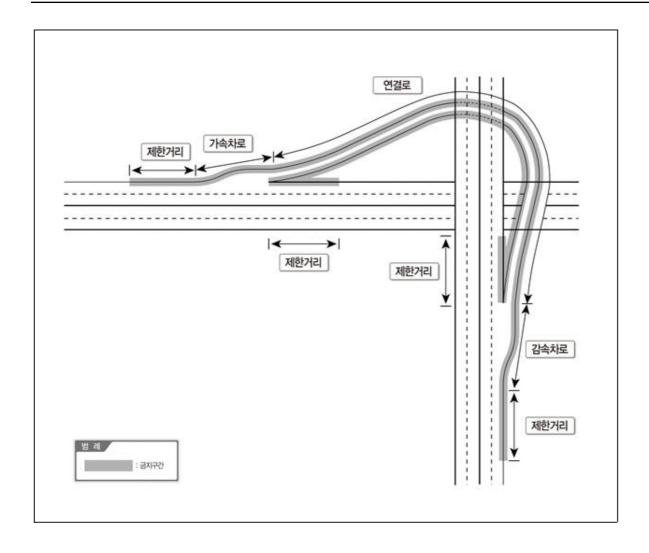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60	45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 <예시도> 입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 비고

-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 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별표 4의2] 삭제 <2014.12.29.>

## [별표 5] <개정 2014.12.29.>

##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21 A	주차 대수	감속부의	의 길이	가속부.	가속부의 길이		
시 설	(가구수)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_	40 (25)	15 (10)	65 (45)	20 (15)		
나. 휴게소·주유소 등	_	40 (25)	15 (10)	65 (45)	20 (15)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_	25 (15)	10 (10)	l	가속차로 20)		
라. 사도·농로·마을 진입로 또는 그 밖에	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			리곡선화 지름: 7m)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	15 (10)	10 (10)		가속차로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20대 이하	15 (10)	10 (10)	. – .	가 <del>속</del> 차로 [20]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I	가속차로 [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바. 주차장 · 건설기계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주기장·운수시설· 의료시설·운동시설 ·관람시설·집회시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I	가속차로 [20]		
설 및 위락시설 등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사. 공장·숙박시설· 업무시설·근린생활	20대 이하			리곡선화 지름: 7m)			
시설 및 기타시설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5가구 이하)			리곡선화 지름: 3m)			
아. 주택 진입로 등	(20가구 이하)			리곡선화 지름: 5m)			
	(1007구 이하)	25 (15)	10 (10)	l	가속차로 20)		

	(1017구 아상)	40 (25)	15 (10)	65 (45)	20 (15)
자. 농어촌 소규모 시 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1			리곡선화 지름: 3m)	

비고

-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 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 설	주차 대수	감속부	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 \ \ \ \ \ \ \ \ \ \ \ \ \ \ \ \ \ \	(가구 수)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_	45 (30)	15 (10)	90 (65)	30 (20)	
나. 휴게소·주유소	_	45	15	90	30	
등		(30)	(10)	(65)	(20)	
다. 자동차정비업소	_	30	10	60	20	
등		(20)	(10)	(40)	(20)	
라. 사도·농로·마 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_	20 (15)	10 (10)	40 (30)	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	10대 이하	20	10	40	20	
반 음식점 등		(15)	(10)	(30)	(20)	
	11대 이상	30	10	60	20	
	30대 이하	(20)	(10)	(4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바. 주차장·건설기 계주기장·운수시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설·의료시설·운 동시설·관람시설 ·집회시설 및 위 락시설 등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사. 공장·숙박시설 ·업무시설·근린	2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생활시설 및 기타 시설	21대 이상 5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5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5기구 이하)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아. 주택 진입로 등	(1007유 야하)	30 (20)	10 (10)	60 (40)	20 (20)
	(1017구 아상)	45 (30)	15 (10)	90 (65)	30 (20)
자. 농어촌 소규모 시 설(소규모 축사 또 는 창고 등)	_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 비고

-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2.29.>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	일자				처리	네기간	21	일	
	성명(법인	의 경우 그 명칭	빙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	は인등록번	호 또는	외국인등	록번호	)	
신청인	주소(법인	의 경우 주사	무소 소재지)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위	우편			
	① 연결 :	목적			② 점용기	<u>7</u> }					
	점용장소	. 점용면적							(		)
	공사 실시	방법			공사시기 년	뭘	일 ^		\ 년	월	m <sup>*</sup> ) 일
신청 내용	도로 복구	방법								_	
	③ 도로 -	종류 및 노선명	1								
			시설의 종류 및 명	<u></u>							
	_		U 「도로와 다른 시			」제4조	[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
로, 그 :	밖의 시설	을 연결하기 위	하여 위와 같이 ㅎ	기를 신정	합니다.		년		월		일
도	로관리청	귀하		신청	인				(	서명 또	는 인)
		연결계획서		N He		1-H-0	n talau	NOTE			
신청인 제출서		면적은 1/1,20	차로, 부가차로, 회전 0 이상의 평면도에 ! 물 관리자의 의견서( <sup>3</sup> 합니다.)	도로 중심선(	세서의 좌우거	리 및 위	치를 표시	心 (합니다)		수수5 1,000	
		벌금에 처합니		조제5호).							
유의사	항	니다(「도로법.	고 도로를 점용하면 」 제72조 및 제114. I는 관계 규정에 따리	조제6호).							
		과태료가 부과	1는 건계 유용해 떠 됩니다(「도로법」 제 장하려면 허가기간이	66조 및 제	117조제2항제	세1호).			2 300	121210	.101=1
작성방	①란은 휴게소·주유소·공장·이파트·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										
신청/ 작성		접수		검토				1가서	→	발	급
신청인	1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	리기관	ᄎ	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m\*(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2.29.>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접 수

처리기관

현지조사

처리기관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01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성명(법인의 경우 :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l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록번호)		
신청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① 허가번호			당초 허가기간				
	② 연결 목적							
.1.=1	점용장소 · 점용면	적				( m²)		
신청 내용	③ 도로 종류 및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연장 사유	장 사유						
「도르	- 르법」 제52조, 제6	1조 및 「도로와 다른 시	설의 연결(	에 관한 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도	로에 다른 도		
로, 통로	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						
					년	월 일		
	그리기원 그리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	류					수수료: 1,000원		
	벌금에 첫	!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 처합니다(「도로법」 제114 !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조제5호).					
유의사	항 니다(15 3. 허가를 발	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고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합니다.			
작성방	법 ②란은 휴게	해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 소ㆍ주유소ㆍ공장ㆍ이파트 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	· 진입로 등					

처리절차

검 토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m\*(재활용품)]

발 급

허가서

처리기관

법제처 22

결 재

처리기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2.29.>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자						처리기간	1	U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전	전자우편			
신청 내용	① 허가번	호					허가기간						
	② 연결 목적												
	점용장소	점용장소 · 점용면적 (m²)											
	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변경내용	변경내용											
「도르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												
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시처	ol			년	월	/und rela	일 - 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b>도로관리청</b> 귀하										: U)			
 신청인 제출서	H	경내용 관계	l 도서									수수료: 1,000원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유의사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항 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양 다녀, '포도합' 제72호 및 제114호제8회.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	(①란은 기 허기받은 허기번호를 적습니다. 방법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이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													
신청시	н Г		1		1		7		1		]	–	
작성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	결 재	->	허가서	->	발 급	;

210mm×297mm[백상지 80g/m\*(재활용품)]

법제처 23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2.29.>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결 개요	도로종류 및 노선명											
	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도로의 연결지점											
	사용 목적											
		시공	물량		미시공물량							
	시설명	단위 물량		사업비	시설명	단위	물량	사업비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유의시	유의사항 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210mm×297mm[백상지 80g/m\*(재활용품)]